

# 검역관리지역

2024년 1월 1일 기준

'검역관리지역'을 감시 기간 내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「건강상태질문서」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 
이를 위반할 경우,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구분	국가	콜레라 (26)	폴리오 (24)	황열 (42)	페스트 (5)	중동호흡기 증후군 (13)	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(6)	뎅기열 (56)	치쿤구니아열 (22)	지카바이러스 감염증 (14)	홍역* (119)
아시아 · 중동 39 개국	1	네팔									●
	2	대만					●	●			
	3	라오스						●			●
	4	레바논	●				●				●
	5	말레이시아						●	●		●
	6	몽골				●					
	7	몰디브									●
	8	미얀마									●
	9	바레인					●				●
	10	방글라데시	●					●			●
	11	베트남						●			●
	12	부탄									●
	13	사우디아라비아					●				●
	14	스리랑카						●			●
	15	시리아	●				●				●
	16	싱가포르						●			●
	17	아랍에미리트					●				●
	18	아르메니아									●
	19	아프가니스탄	●	●					●		●
	20	예멘	●	●			●				●
	21	오만					●				●
	22	요르단					●				●
	23	우즈베키스탄									●
	24	이라크	●				●				●
	25	이란					●				●
	26	이스라엘		●			●				●
	27	인도	●						●	●	●
	28	인도네시아		●							●
	29	일본									●
	30	중국				● <sup>a</sup>		● <sup>b</sup>	●		●
	31	카자흐스탄									●
	32	카타르					●				●
	33	캄보디아						●	●		●
	34	쿠웨이트					●				●
	35	키르기스스탄									●
	36	타지키스탄									●
	37	태국								●	●
	38	파키스탄	●	●							●
	39	필리핀	●						●	●	●





구분	국가	콜레라 (26)	폴리오 (24)	황열 (42)	페스트 (5)	중증호흡기 증후군 (13)	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(6)	뎅기열 (56)	치쿤구니아열 (22)	지카바이러스 감염증 (14)	홍역* (119)
유럽 27 개 국	8 벨기에										●
	9 벨라루스										●
	1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									●
	11 세르비아										●
	12 스웨덴										●
	13 스위스										●
	14 스페인							●			●
	15 슬로바키아										●
	16 아일랜드										●
	17 아제르바이젠										●
	18 알바니아										●
	19 에스토니아										●
	20 영국						●				●
	21 오스트리아										●
	22 우크라이나										●
	23 이탈리아								●		●
	24 조지아										●
	25 튀르키예(터키)										●
	26 폴란드										●
	27 프랑스								●		●

\* 해당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발열,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 있을 경우에 검역관에게 신고(유증상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)

a 내몽골자치구 / b 광둥성, 후난성, 쓰촨성, 광시성, 안휘성, 장시성, 충칭시 / c 콜로라도주 / d 미시간주

